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에 검역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53명(6급 10명, 7급 13명, 8급 20명, 9급 10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질병관리청에 검역·방역 등 감염병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1명),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의 정원 4명(5급 1명, 연구사 3명) 및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질병대응센터의 정원 4명(8급 2명, 9급 1명, 연구관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질병관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11.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정보
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8장(제38조)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476”을 “47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5”를 “47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65”를 “462”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918”을 “9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918”을 “91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08”을 “900”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검역 업무(국립검역소)	12명

별표 7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질병관리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 8명(5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연구기획조정부) ① (생략) ② 연구기획조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u><신 설></u> 6. · 7. (생략)	제21조(연구기획조정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u>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 및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정보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7. · 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제23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① (생략) ②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u>첨단재생의료기관 관리 · 감독, 연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u>제8장 한시정원</u>	제23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제38조(<u>한시정원</u>) <u>검역 · 방역 등 감염병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u>	<u><삭 제></u>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
년 12월 20일까지 별표 7에 따
른 한시정원을 질병관리청에 둔
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76</u>	<u>473</u>	-3
·	·	·	
·	·	·	
일반직 계	<u>475</u>	<u>472</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65</u>	<u>462</u>	-3
·	·	·	

[별표 5]

질병관리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18</u>	<u>910</u>	-8
일반직 계	<u>918</u>	<u>910</u>	-8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08</u>	<u>900</u>	-8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8